

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 추가
조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캠핑장의 효율적인 통합
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· (당초)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· (변경)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○ 목적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캠핑장 추가 구성에 따른 시설 사용 관련 정비(안 별표 1~5)
- 띄어쓰기 정비(안 제8조~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(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) 추가 구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조에 관리·운영의 범위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규정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추가 조성된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5를 수정하였음.
- 캠핑장의 주요시설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양호동에 위치한 기존의 「구미캠핑장」과 고아읍

괴평리에 위치한 신규 캠핑장인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구분이 어려워 캠핑장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일반 구미시민이 ‘카라반’에도 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다자녀 가정, 장애인 등의 대상은 ‘카라반’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확대가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주중의 경우 캠핑장의 시설 중 평상의 이용율이 타 시설 대비 낮으므로, 비성수기의 주중같은 경우 예약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- 구미캠핑장과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을 연결하는 내부 도로가 없어 시설이용객이 캠핑장을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함. 내부 연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